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 개요

- 원고들은 아동기에 부랑아 정책에 따라 공무원 및 경찰에게 연행된 후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되어 구타 및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유린에 시달린 피해자 및 유족들로, 2025. 10. 23.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을 계획·수립하고 실행한 대한민국과 위 부랑아 정책에 따른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운영·관리한 서울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5. 4. 22.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아동인권침해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아동인권침해사건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피해회복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본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금·강제노역·기본권 침해를 가한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진상규명과 평가를 받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국가배상소송을 통하여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위헌·위법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들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함.

□ 청구인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 수용피해자 및 유족 10인

□ 사건의 개요

○ 정부의 부랑아 정책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개요

-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감화령과 조선소년령을 답습하여 치안관리적 측면의 부랑아 단속을 행하여 왔는데, 실제 보호자가 있고 범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아동을 부랑인 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였음.
- 서울시는 이러한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를 제정한 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을 통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무차별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는 자의적 단속을 통하여 아동을 1차로 수용한 후, 경기도 선감학원,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분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4월 22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공식 사

과·피해회복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아동 인권침해

- 수용과정의 인권침해 : 당시 경찰, 공무원들은 ‘부랑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단속 기준 없이, 자의적인 구금을 남발하였고, 단속과정에서 신원확인이나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단속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행하여 지기도 하였음. 수용과정에서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다른 수용시설로 전원하여 아동들의 사회적 연고를 단절시킴
- 운영과정의 인권침해
 - 폭력 등 가혹행위 :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아동들을 통제하기 위한 직원들의 폭력이 일상적이었음. 수용아동간의 폭력과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함.
 - 강제노동 :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부지확장사업, 시설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다양한 작업에 아동들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함
 - 주거와 식생활 및 의료환경에서의 인권침해 :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아동들을 과밀수용하였으며(정원이 1000명이었음에도, 설립당시 1,515명이었고 1966년경에는 2,328명 수용), 빈약하고 부족한 식단으로 아동들이 굶주림에 시달림.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동들을 위험에 놓이게 함.
 - 전원 과정에서의 침해 : 연고자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전원하고, 전원 후에도 아동에 관한 기록을 전원시설에 송부하지 않아 아동들의 연고를 단절시킴.

□ 국가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1. 헌법 위반(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헌법 제8조(평등), 제9조(신체의 자유·강제노역 금지), 제10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0조(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교육받을 권리 침해(헌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초등의무교육 (헌법 제16조), 소년 근로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17조)아동의 보호의무 위반(헌법 제36조 제2항)등 위반

2. 국내법 위반

- 내무부훈령 제410호 위헌·위법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라는 명칭의 행정구칙으로,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바,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적 성격

- 서울특별시 조례의 위헌·위법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아동일시보호위탁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는 부랑아에 대한 정의, 서울시 공무원의 단속 권한, 수용 기간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위헌·위법한 조례

- 아동복지법령 위반

제1조(아동의 건전하고 행복한 육성, 복리 보장 의무 위반), 제15조, 제20조(아동 학대 금지 및 건강유지 의무 위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아동의 신상정보 관련 서류 보고 등 의무 위반), 제8조(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신원확인 절차 위반, 연고자 확인 의무 위반, 보호자 통지절차 위반), 아동복지시설서치기준령 제3조, 제7조(아동복지시설 면적 기준, 제공 식품 기준 위반)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제3조(보호조치 요건 위반)

3. 국제인권규범 위반

- 세계인권선언

제2조(차별금지)·제9조(장의적 체포, 구금 금지)·제12·13조(사생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제23·제24조(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조건보장, 휴식의 권리 등), 제25조(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 권리), 제26조(초등 무상교육 등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 위반

- 아동권리협약

제2조(차별금지), 제3조(아동최상의 이익), 제6조(아동의 생명과 발전 보장), 제12조(아동의 자기결정권) 등 위반

□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수용기간 1년당 1억 2천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주요쟁점

-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근거한 아동 강제수용의 국가책임
- 아동복지법상 보호의무 위반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의 법적 효과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범위

□ 청구의 의의

본 소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부랑아”로 낙인찍어 자의적으로 구금·노역시킨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법적 진상규명과 책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 회복 조치, ②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③ 사회적 기억 확산과 명예회복을 요구함.